



양돈장 인력 가뭄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돈장 인력 가뭄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 책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 본 고는 정부가 농업분야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5,000명을 도입하기로 결정 (2002. 8. 29)함에 따라 농림부가 지난 1월 27일 발표한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농림부 -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 동 범시행령 제24조의2 및 제24조의4 내지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이하 "농업연수제도"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농업연수"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연수추천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연수업체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연수를 말한다.
- "농업연수생"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연수를 받는 외국인을 말한다.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연수취업"이라 함은 농업연수를 마치고 출입

국관리법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 "연수취업자"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 "연수업체"라 함은 농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이하 "연수생등"이라 한다)가 연수받거나 취업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송출국가"라 함은 농업연수생을 송출하는 국가를 말한다.
- "송출기관"이라 함은 농업연수를 희망하는 자를 모집하여 대한민국에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송출국가의 공공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의 지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의한 농업연수 대상업종 및 연수생 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입규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연수생의 도입규모는 국내에 체류중인 연수생등 및 이탈자를 합한 수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송출국가의 지정 및 취소) ①농림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산정심”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송출국가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당해 국가에 대한 송출국가 지정취소안을 마련하여 산정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생등의 이탈률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때

2. 연수업체의 선호도가 다른 송출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진 때

3. 송출기관이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사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이 지침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추천 의뢰에 응하지 않은 때

5. 그밖에 송출국가 또는 송출기관의 책임있는 자유로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국가를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당해 국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송출국가별 정원배정 및 조정) ①농림부장관은 산정심의 심의를 거쳐 송출국가별로 정원을 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배정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송출국가별로 정원을 배정하는 때에는 연수생등의 이탈률, 중도귀국률, 연수업체의 선호도, 한국어소양시험 실시여부, 가축방역조치 이행여부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8조(배정인원 도입 등)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농업연수 인원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연수생등(이탈자를 포함한다)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송출국가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대체인원이 도입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

제9조(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의 설치 등) ①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이하 “연수협력단”이라 한다)을 둈다.

②연수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과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에 대한 정원배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0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연수생 및 연수업체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등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5.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체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등의 총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농업연수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연수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업무 및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10조(연수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①농림부장관은 연수협력단의 업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연수협력단의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연수협력단의 업무수행 및 운영상황을 연 2회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연수사업운영협의회 설치) ①중앙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회내에 연수사업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과의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별 인원재배정에 관한 사항

3.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체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4. 연수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당사자



특집

양돈장 인력 가뭄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의 분쟁조정

5. 그밖에 중앙회장이 연수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12조(농업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 설치) ①중앙회장은 연수생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중앙회내에 농업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수생등에 대한 연수업체의 부당행위에 관한 사항

2. 재해 연수생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중앙회장이 연수생등의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은 연수생등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행하는 진정·신고·신청 등을 발행하지 않는다.

④중앙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조정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 연수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13조(농업연수생상담센터의 운영) ①중앙회장은 연수생등의 애로상담 접수·처리를 위하여 연수 협력단에 농업연수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상담센터의 위치·연락처·이용방법 등을 농업연수생에게 사전교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상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④송출기관 및 연수업체는 연수생등이 상담센터에 애로사항 등의 신고를 이유로 연수생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송출기관

제14조(송출기관의 선정) ①중앙회장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송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국가가 새로 지정되었을 때

2. 농업연수생 도입인원 확대로 송출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한 때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산정심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별 배정방안에 의하여 송출국가에 송출기관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추천된 송출기관 중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송출기관중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송출국가 정부로부터 해외인력송출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2. 해외송출 실적이 있는 자

3. 적정 교육시설 및 교육인원을 확보한 자

4. 그밖에 송출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회장은 당해 송출국가가 추천한 송출기관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송출기관 추천을 다시 의뢰할 수 있다.

④중앙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자체없이 인력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송출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에 지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⑥중앙회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사·협력업체에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송출기관은 국내지사·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⑦그밖의 국내지사의 설치 및 협력업체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15조(송출기관에 대한 정원배정) ①중앙회장은 송출기관별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평가

결과, 이탈률, 중도귀국률, 국내지사의 사후관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국가별로 배정되거나 조정된 정원의 범위내에서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송출국가 및 송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송출기관별 농업연수인원을 재배정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송출기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중앙회장은 매년 1회이상 송출기관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탈률과 가축방역조치 이행상황을 포함한 점검·평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송출기관별 정원조정 및 재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송출기관과의 계약해지 등) ①중앙회장은 송출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연수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송출기관이 송출한 연수생등의 이탈률이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때

2. 송출기관이 송출수수료를 과다징수하거나 농업연수생의 입국지연, 가축방역조치 미이행 등 중요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평가결과 농업연수생 송출실적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생등의 관리업무 수행실적이 부진한 때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송출국가에 송출기관 추천을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농업연수생

제18조(농업연수생의 자격) ①농업연수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30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로서 신체건강한 자
2.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연수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6.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에 합격한 자

②중앙회장은 농업연수생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출국조치 할 수 있다.

③중앙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미달 농업연수생을 출국조치한 때에는 당해 농업연수생을 송출한 송출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농업연수생의 선발 및 추천) ①중앙회장은 농업연수생의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송출기관별 선발예정 인원 및 추천배수를 송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배수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송출기관은 농업연수회망자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시에는 자격기준·연수조건·선발인원·추천배수 등을 명시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표준공고문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중앙회장은 송출기관으로부터 추천된 농업연수회망자를 대상으로 컴퓨터추첨을 실시하여 농업연수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송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송출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농업연수생에 대하여 공인의료기관을 통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성병 등 전염성 질병, 농업연수에 장애가 되는 신체이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농업연수생의 교육 등) ①송출기관은 선발된 농업연수생이 입국전에 한국어, 대한민국의 문화, 출입국관리제도, 농업연수생의 권리와 의무, 가축방역 등 연수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10일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중앙회장



특집

양돈장 인력 가뭄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송출기관은 제1항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가축방역과 관련한 사항 등을 중앙회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중앙회장은 입국한 농업연수생이 한국사회와 연수업체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문화·기후, 한국인과 농업의 특성, 교통·금융·경제활동 등 실생활 정보와 농업연수생의 권리·의무, 권익침해시 구제방법, 가축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3일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장은 농업연수생의 사기진작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모범연수생을 선발하여 산업체·문화재·우수농장 등에 대한 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중앙회장은 농업연수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국후 5일이내에 공인된 의료검진기관에서 농업연수생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농업연수조건 등) ① 농업연수생의 연수조건은 중앙회와 연수업체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의 연수수당과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장은 연수생등이 업무 이외의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상해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한국어소양시험 지원) 중앙회장은 농업연수회망자 모집과정에서 한국어소양시험을 실시하는 송출국가·송출기관에 대한 문제 제공·시험 방법지도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체류자격의 변경) 중앙회장은 농업연수생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업연수기간 만료전에 당해 농업연수생이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연수업체

제24조(연수업체의 자격요건) 농업연수생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수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1. 별표 1의 농업연수 대상업종을 경영하는 농업 경영체

2. 연수생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농업경영체

3.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납세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농업경영체

제25조(연수업체의 추천신청) 연수생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연수업체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신청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납세고유번호 증명서류 사본

2. 숙박시설 보유사실 증명서 또는 숙박시설 제공 계획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한한다)

4.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장이 확인한 영농규모 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제26조(연수업체의 선정) 중앙회장은 연수업체추천신청서상의 농업연수생 신청인원을 별표 1의 농업연수 대상업종 및 연수생 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신청인원 비율에 따라 신청업종별로 배분하고, 업종별로 별표 2의 연수업체 선정기준에 의한 배점과 가점을 합한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동점일 때는 동 선정기준의 항목별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제27조(연수업체의 추천 등) ① 중앙회장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연수업체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연수업체는 제1항의 연수업체추천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동 추천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산업연수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서류를 제출받아 외국인 산업연수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수업체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와 제29조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추천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회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연수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부터 3년간 제1항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추천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농업연수생의 배정 등) ① 중앙회장은 별표 1의 농업연수 대상업종 및 연수생 배정기준의 범위내에서 농업연수생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장은 연수업체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농업연수생의 배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2. 연수생등의 임금을 체불하였을 경우

3. 연수생등의 인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농업연수생의 배정제한 규모·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29조(연수업체 교육) ① 중앙회장은 새로 농업연수생을 배정받은 연수업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송출국가의 생활관습·연수생등 활용 성공사례, 출입국관리법상의 준수사항, 농업연수생의 인권문제, ILO관련규약, 한국농업환경 등 연수제도와 농업연수생의 인권보호 및 가축방역(축산업에 한한다) 등에 관한 교육을 농업연수생 입국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정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수업체는 신규배정 농업연수생에게 작업장 안전수칙, 작업방법, 기계장치 운용방법, 지역생활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8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농업연수 및 연수취업의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작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연수관리비 등) ① 중앙회장은 제27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업체와 농업연수생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연수업체로부터 연수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연수업체의 부도, 휴·폐업, 연수생 등의 중도출국 등으로 농업연수 또는 연수취업이 중단되거나 연수생등이 연수업체를 이탈한 경우

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연수관리비중 교육비·건강 검진비 등 직접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월할 계산하여 연수업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장은 연수업체의 연수수당의 체불 등에 대비하여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수당 등의 지불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업체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연수업체와 중앙회간의 계약에 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관리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보증보험 및 이행보증금의 정수·운용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31조(연수생 대체신청 등) ① 연수업체는 연수취업기간이 만료된 연수취업자를 농업연수생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수취업자의 연수취업기간 종료일 60일 전까지 중앙회장에게 농업연수생의 대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체의 자격요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연수업체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장 연수생등의 관리

제32조(연수생등의 관리) ① 중앙회장은 연수업체와 연수생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연수취업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수생등의 교육, 건강검진, 고충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업체의 추천, 연수생등의 근무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업체의 연수수당·임금체불 등의 부당행위 예방과 지도·감독

4. 연수생등 연수업체의 현황 종합 전산관리



특집

양돈장 인력 가뭄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 연수생등의 건강보험·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지도
 6. 송출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7. 그밖의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송출기관은 연수생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연수생등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2. 연수생등의 입·출국 지원 및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3. 연수생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리
 4. 연수생등의 외국인 등록 등 지도 및 현황 파악
 5. 연수생등의 이탈방지 및 이탈자 출국조치에 관한 사항
 6.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7. 연수생등의 근무처·체류자격 변경에 따른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
 8. 연수생등의 근무상황 점검 및 애로해결
 9. 그밖에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회장이 위탁하는 사항
- ③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송출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업무수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연수생등의 무단이탈 예방) 중앙회장은 연수생등의 연수장소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송출기관·연수업체에 연수생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연수업체의 부당행위 등 예방) ① 중앙회장은 연수수당·임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행위와 연수업체의 연수생등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장은 연수업체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폭행·강제근로 등 부당행위를 한 때에는 연수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당해 연수생등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른 연수업체로 재배정하고 출입국 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농업연수생의 기술자격시험)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연수생의 연수취업 요건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업연수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연수업체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농업연수생에 대하여 응시안내·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6조(계약의 체결) ① 중앙회·송출기관·연수업체 및 농업연수생등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을 당사자간에 체결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계약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연수생이 연수취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의 연수취업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 연수취업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은 체결당시의 이 지침의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7조(연수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제재) ① 이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은 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점검 등 감독을 실시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이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하고 농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장은 연수업체·송출기관 및 연수생등이 본 지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연수계약취소

및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세부규정) ① 중앙회 회장은 이 지침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양돈**

[별표 1] 농업연수 대상업종 및 연수생 배정기준

업 종		영농규모별 배정기준(단위:m ²)								
축산업	젖소사육업	1,400~2,400	2,400~3,400	3,400~4,400	4,400~5,400	5,400~6,400	6,400~7,400	7,400~8,400	8,400~9,400	9,400 이상
	한우우사육업	3,000~5,000	5,000~7,000	7,000~9,000	9,000~11,000	11,000~13,000	13,000~15,000	15,000~17,000	17,000~19,000	19,000 이상
	양돈업	1,000~2,000	2,000~3,000	3,000~4,000	4,000~5,000	5,000~6,000	6,000~7,000	7,000~8,000	8,000~9,000	9,000 이상
	양계업(육계)	5,000~8,000	8,000~11,000	11,000~14,000	14,000~17,000	17,000~20,000	20,000~23,000	23,000~26,000	26,000~29,000	29,000 이상
	양계업(산란계)	2,000~3,500	3,500~5,000	5,000~6,500	6,500~8,000	8,000~9,500	9,500~11,000	11,000~12,500	12,500~14,000	14,000 이상
연수생배정기준		2명이내	3명이내	4명이내	5명이내	6명이내	7명이내	8명이내	9명이내	10명이내

* 축사(산란계는 단상) 면적기준임. 산란계는 부화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함.

[별표 2] 연수업체(양돈장) 선정기준

1. 영농규모별 배점(42점~50점)

업종	축산업(축산면적 m ²)					배점
	젖 소	한 육 우	양 돈	육 계	산 란 계	
경영 규모별(m ²)	4,000	5,000	3,000	25,000	10,000	42점
	4,000~6,000	5,000~11,000	3,000~5,000	25,000~40,000	10,000~15,000	44점
	6,000~8,000	11,000~17,000	5,000~7,000	40,000~55,000	15,000~20,000	46점
	8,000~10,000	17,000~23,000	7,000~9,000	55,000~70,000	20,000~25,000	48점
	10,000	23,000	9,000	70,000	25,000	50점

* 축사(산란계는 단상) 면적기준임. 산란계는 부화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함.

2. 수출실적 가점(5점~10점)

구 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5천만원~1억원	1억원~15억원	15억원~2억원	2억원 이상
점 수	5	6	7	8	9	10

* 수출실적은 직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당해연도 수출계약물량 포함

3.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 가점(5점)

4. 농림부장관이 선정한 신지식농업인 가점(5점)

5. 정부상훈법에 의한 포상 가점(2점~5점)

구 분	농림부장관표창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	포장	훈장
점수(전당)	2	2	3	4	5

* 농업유공자 포상에 한하며, 포상실적건수를 누계합산함.

* 농가는 영농에 함께 종사하고 있는 가족.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인 회사원의 포상실적을 모두 인정함.